



제302회 정례회

2011.07.14.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 전문위원 검토보고

2011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 2011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1년 7월 1일
- 회부일자 : 2011년 7월 7일

3. 제안이유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4. 주요내용

□ 처분(매각)

(단위 : m<sup>2</sup>, 천원)

재 산 의 표 시				추정금액 (천원)	처 분 시 기	처분 사유	매 도 요구자	비고
기관명	구분	소재지	수량(m <sup>2</sup> )					
장 연 초 광진폐교	토지	괴산군 장연면 광진리 814-1	10,691.0	458,893	2011. 하반기	괴산군에서 방곡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위한 권역활성화센터 조성을 추진함에 따라 처분(매각)	괴산군	
	건물		1,050.3	294,233				
합 계 (2건)			11,741.3	753,126				

### 장연초등학교 광진폐교 처분

- 폐교일자 : 2005. 3. 1.
- 재산위치 : 괴산군 장연면 광진리 814-1
- 재산현황
  - 토지 : 10,691㎡(4필지)
  - 건물 : 본관교사 외 5동 / 1,050.3㎡
- 추정금액 : 753,126천원
- 사 유 : 괴산군에서 동 폐교를 매입하여 방곡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에 따른 권역활성화센터로 활용하고자 함

## 5. 검토의견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괴산군청이 괴산군 장연면 광진리 814-1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장연초 광진폐교를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권역활성화센터’를 설치하고자 매각을 요청함에 따라 추진되는 것임.
- 매각대상인 폐교는 1944. 9. 1. 광진초등학교로 설립되었으며, 이농현상 및 저 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1999. 9. 1. 장연초 분교장으로 격하 운영 되기까지 총 41회 2,274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2005. 3. 1. 폐교됨.
- 폐교재산은 지역주민 5명으로부터 기부 받은 토지 7,736㎡(73%)을 포함 토지 10,691㎡(4필지), 본관교사 외 5동 1,050.3㎡ 등 총 면적 11,741.3㎡에 매각예정 금액은 753,126천원임.
- 검토결과 본 변경계획안은 관련법령에 어긋남이 없고, 향후 교육재산으로 재활용과 기부재산에 따른 민원 소지 등이 없다는 집행청의 의견이므로, 장연초 광진폐교 매각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타당한 결정이라 생각됨.

## 관 계 법 령 발 취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26]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전문개정 2009.4.24]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교육감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8.6>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